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에 교정시설의 신설·이전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21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2. 제출일 : 2024. 6. 7.
3. 회부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1)에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 등에 <u>관한 사항</u>
10. (생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과밀수용 해소와 노후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교정 시설의 신축 및 이전 계획을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법무부의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2.58㎡)¹⁾이 OECD 국가 평균(약 4.4㎡)²⁾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³⁾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교정시설이 전체 52%인 28개에 이르는 등 교정시설의 노후화도 심화되는 상황임. 그럼에도 노후된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을 기본계획에 직접 포함시킴으로써 교정시설의 신설·이전 추진을 촉진하여 수용공간 확대 등 교정환경 개선과 보다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 구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표 2] 준공 후 경과 기간별 교정시설 현황

경과 기간	35년 이상	30~34년	25~29년	20~24년	10~19년	10년 미만	합 계
시설 수 (비중)	23개 (43%)	5개 (9%)	5개 (9%)	6개 (11%)	9개 (17%)	6개 (11%)	54개 (100%)

* 자료: 법무부

2) 법무부, 「2021~2025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p. 14

3) 헌법재판소는 수용자 1인당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표 3] 교정시설 수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용정원(A)		47,990	48,600	48,980	48,990	49,922
수용현원 (B)	연 말	54,099	53,956	52,130	52,940	59,088
	일평균	54,624	53,873	52,368	51,117	56,577
수용률 (B/A)	연 말	112.7%	111.0%	106.4%	108.0%	118.4%
	일평균	113.8%	110.8%	106.9%	104.3%	113.3%

자료: 법무부

다만,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은 대규모 재정 수반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 및 갈등 유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마스터플랜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였음에도 소요예산 확보가 지연되어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와 공론화 과정없이 신축 및 이전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경우 소모적인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5조의2제2항제3호가 기본계획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수용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48

참고 교정시설 현황

구분 시설		준공일	경과연수	총부지면적(m)	구분 시설		준공일	경과연수	총부지면적(m)
1	안양(교)	1963.07.30	60년	370,634	28	울산(구)	1993.12.29	30년	123,130
2	강릉(교)	1970.12.31	53년	110,509	29	수원(구)	1996.06.30	27년	54,091
3	창원(교)	1971.06.08	52년	120,543	30	평택지소	1996.09.01	27년	4,587
4	제주(교)	1971.09.20	52년	85,985	31	인천(구)	1997.08.27	26년	53,476
5	전주(교)	1972.11.15	51년	107,600	32	논산지소	1997.10.20	26년	79,989
6	경주(교)	1973.08.14	50년	82,086	33	대구(구)	1998.12.15	25년	57,368
7	부산(구)	1973.12.20	50년	99,485	34	여주(교)	2001.05.14	22년	169,779
8	홍성(교)	1974.07.19	49년	118,938	35	서산지소	2001.10.26	22년	64,080
9	부산(교)	1977.10.10	46년	126,924	36	청주여자(교)	2003.08.22	20년	7,843
10	공주(교)	1978.09.13	45년	212,044	37	충주(구)	2004.01.02	19년	50,583
11	청주(교)	1979.03.15	44년	153,983	38	통영(구)	2004.01.31	19년	42,072
12	원주(교)	1979.12.29	44년	118,626	39	순천(교)	2004.02.19	19년	145,156
13	춘천(교)	1981.04.26	42년	152,633	40	포항(교)	2005.10.24	18년	184,012
14	의정부(교)	1981.07.20	42년	828,008	41	화성직훈(교)	2008.06.15	15년	233,876
15	김천소년(교)	1981.09.15	42년	105,926	42	밀양(구)	2009.09.04	14년	139,831
16	경북1(교)	1981.11.30	42년	2,487,706	43	영월(교)	2009.09.07	14년	185,057
17	경북직훈(교)	1982.12.15	41년		44	해남(교)	2009.10.30	14년	99,065
18	경북3(교)	1982.12.15	41년		45	서울남부(구)	2011.09.15	12년	229,192
19	대전(교)	1983.11.30	40년	407,981	46	서울남부(교)	2011.09.15	12년	
20	안동(교)	1985.12.12	38년	206,306	47	상주(교)	2014.02.07	9년	206,995
21	서울(구)	1987.10.31	36년	434,867	48	장흥(교)	2014.04.16	9년	156,035
22	천안개방(교)	1988.08.10	35년	233,649	49	광주(교)	2014.11.05	9년	282,808
23	군산(교)	1988.10.30	35년	186,936	50	정읍(교)	2014.12.19	9년	148,187
24	목포(교)	1989.10.30	34년	264,564	51	서울동부(구)	2017.03.24	6년	41,658
25	진주(교)	1990.01.12	33년	311,505	52	강원북부(교)	2020.04.12	3년	140,095
26	천안(교)	1990.10.31	33년	413,257	53	대구(교)	2020.10.21	3년	268,455
27	경북2(교)	1992.12.03	31년	152,620	54	거창(구)	2023.01.08	1년	157,579

자료: 법무부